

서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

환불 방법 변경됩니다



변경 전

변경 후

~ 2024년 3월 31일까지

➤ 환불 방법 :

프로그램 시작 후
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,

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에
대하여 **일할계산**하여 환불

2024년 4월 1일부터~

➤ 환불 방법 :

프로그램 시작 후
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,

가. 학습비 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총수업시간 1/3이 지나기 이전	→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총수업시간 1/3이 지난 후 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	→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총수업시간 1/2이 지난 후	→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)	+
		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합산

「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에 따라
서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환불기준이 2024년 4월 1일 부터 시행규칙 [별표1]과 같이 바뀝니다!